
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전행 444~638 (전화번호 25-6376)		전철국장 조동	
처리기간	시 장			
시행일자	27. 6.			
보존년한	6/11			
보조기관	건설국장	전철	합우부장	도시계획과장
	건설행정과장		도로과장	
	보상계장		도시계획과장	
기안책임자	김광서 (추모식)			
경유수신참조	과안참조	발신	공제	
제목	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			
(제안)				
수신 내부결재				
제목 등 건				
1. 건설부고시 제 177 호(1962. 12. 8.)로 고시				
된 관양수 대방동 39번지 도로이설 공사				
구역내에 저촉 편입되는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				
공고 제 105 호(1997. 5. 12.)로 도시계획				
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하였으므로				

2. 별첨 고시(안) 및 인가증(안)과 같이 인가

하고 건설부고시 제 123호 (73. 4. 4) 에 의거 **관양구**

**대방동 29번지 도로개설사업**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안과  
같이 시행고자 합니다

첨부 1. 서울특별시 고시(안) 1부

2. 인가증(안) 1부 끝

(제 2 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등 건

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

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건설부고시 제 123호 (73. 4. 4)

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내용과 같이 인가하였기 통보

하니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1부

2. 인가증(사본) 1부 끝

수신처 **도로과, 도시계획과, 관양구청**

(제3안)

수신 건설부장관

제목 동건

1.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

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건설부고시 제123호 (73.4.4)  
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인가하였기 보고 합니다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. 호. 1부

2. 인가증사본 1부

3. 도면 1부

4. 토지조서 1부 끝

(제4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제목 관보게재의뢰

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 
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1호를 송부하오니 관보에  
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2부

2. 인가증사본 2부 끝

(제5안)

수신 문화공보실장

발신 건설행정과장

제목 시보게재 의뢰

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

구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를 송부하오나

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서울특별시 제 호 1부 끝

(제6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통지

1. 도시계획사업인 관악구 내방동 39번지

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커하 소유재산을

수용하고 공사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

제26조의 구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서울

특별시 고시 제 호로 인가되었기 통지하오나 공사

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# 인 가 증

1. 사업시행의 위치 : 관양수 대방동 39번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관양수 대방동 39번지 도로개선공사
3. 사업 규모 : [ 폭 = 15-20 m  
연장 = 1.4 ~ 2 m
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
5. 사업 인가 번호 :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6. 사업 기간 :
7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
8.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여와의 권리명세 : 별첨  
위와 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 
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

1977. 6.

## 서울특별시

(인가 조건)

1.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
2. 별첨 개략 설계도서 (평면도) 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